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규남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970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6월 07일

발 의 자: 김규남, 고광민,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지향,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송경택,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용균,
이종배, 이효원, 정지웅,
허·훈 의원(19명)

1. 제안이유

- 농촌 고령화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한편, 대한민국 인구추계 통계 발표(통계청)에 따르면 75세 이상 서울시 후기고령자는 2050년 181만 8000명으로 절대적인 후기노령자 인구가 서울에 가장 많을 것으로 확인됨.
- 고령화된 인구구조 안에서 건강한 고령 인구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시급한 상황으로, 고령자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 잡힌 식사와 문화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정책이 대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서울시 폐교를 활용한 노인복지주택 설립 및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고령자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인프라 환경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발의됨.

2.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유무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제1항)
- 나. 폐교안에 있는 국유시설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2조제1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공공체육시설로”를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주택으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공체육시설로”을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주택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의 폐교재산¹⁾ 활용에 대하여 종전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²⁾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주택 설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안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이홍래

☎ 02-2180-7952

e-mail : hongl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 1) “폐교재산”이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산으로 동 조례 제9조(대부·매각 등) 제12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에 따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이 가능함
- 2)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조) >

1. “폐교”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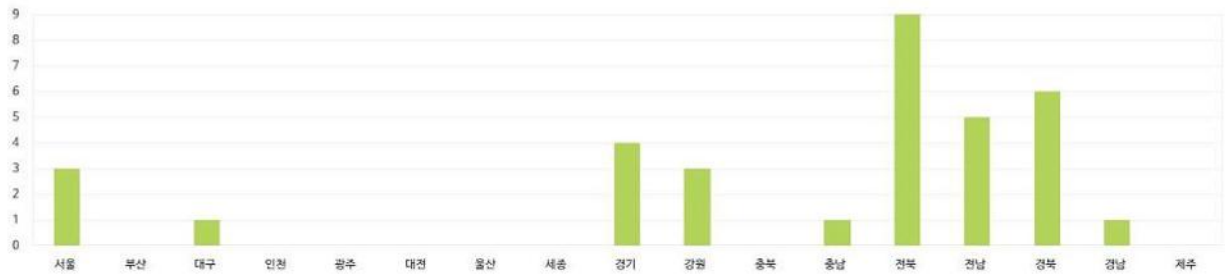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붙임 시·도교육청 폐교재산현황 (기준일자 2024.3.1., 공립학교 기준(분교 포함), 시도교육청 취합자료)

시·도교육청	폐교학교수	매각폐교	보유폐교					보유폐교 대장가액 (단위:천원)
			활용폐교			미활용폐교 (B)	계 (A+B)	
			대부(임대)	자체활용	계(A)			
서울	7	1	-	-	-	6	6	161,741,088
부산	48	20	2	24	26	2	28	244,215,158
대구	49	20	2	27	29	-	29	269,414,563
인천	59	40	3	8	11	8	19	44,278,719
광주	15	8	4	3	7	-	7	19,723,314
대전	8	5	-	1	1	2	3	1,647,553
울산	27	10	3	12	15	2	17	61,826,406
세종	13	12	-	1	1	-	1	5,740,806
경기	183	58	61	45	106	19	125	324,339,198
강원	482	282	120	24	144	56	200	114,290,603
충북	260	133	72	26	98	29	127	167,604,597
충남	272	218	10	24	34	20	54	95,607,829
전북	336	275	2	52	54	7	61	110,573,947
전남	844	667	42	60	102	75	177	108,102,638
경북	731	490	110	74	184	57	241	12,352,419,888
경남	586	366	90	58	148	72	220	68,179,319
제주	35	4	15	4	19	12	31	14,262,830
계	3,955	2,609	536	443	979	367	1,346	14,163,968,456

시·도별 폐교보유 현황 (단위:교) 2024



□ 서울시교육청 폐교현황수 : 7개교

기준일자 2024.3.1.

구분	폐교명	폐교연도	지역교육청	급별	활용현황	주소
1	공진중	2020	강서양천	중	미활용	강서구 가양동 1476
2	덕수고 행당분교	2024	성동광진	고	미활용	성동구 행당동 70-28
3	도봉고	2024	북부	고	미활용	도봉구 도봉동 556
4	서울오곡국민학교	1999	강서양천	초	매각	강서구 오곡동 1555
5	성수공고	2024	성동광진	고	미활용	성동구 성수동2가 333-128
6	염강초	2020	강서양천	초	미활용	강서구 가양동 1492
7	화양초	2023	성동광진	초	미활용	광진구 화양동 12-2

*자료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